

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[별표 2] <개정 2026. 6. 30.>

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
(제6조제2항 관련)

구분	계급	수석전문관	전문관	부전문관
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	박사	4년	-	-
	석사	8년	4년	-

비고: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을 말한다.